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제2판

---

2021. 2. 23.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 순 서

1. 목적 및 원칙 .....	1
2. 범위 및 역할 .....	1
3. 단계별 기관 조치사항 .....	3
4. 행정사항 .....	5
[붙임1]장례관리 및 시신처리 .....	6
[부록1]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	10
[부록2] 코로나19 폐기물 관리 .....	18
[참고1] 코로나바이러스19 의료폐기물 관리체계도 .....	23
[참고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및 개인보호장비 .....	24
[참고3]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	25
[붙임2]장례지원반 운영계획 .....	27
[붙임3]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운영의료기관 현황	28
[붙임4]전국 화장시설 현황 .....	29
[붙임5]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현황 .....	31
[참고4] 관계법령 .....	36

## 1

### 목적 및 원칙

-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으로 감염 확산 방지 및 사회 불안 요인 차단
  -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 (원칙)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족의 뜻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 실시
  -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족의 동의하에 「先 화장, 後 장례」 실시

#### < 화장 및 장례 예시 >

- ① 의료기관(시신처리, 입관) → 화장시설(화장) → 장례식장(장례)
- ② 의료기관(시신처리, 입관) → 장례식장(안치) → 화장시설(화장) → 장례식장(장례)

## 2

### 범위 및 역할

- (범위)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확인된 사망자의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 전반
- (역할)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의료기관, 장사시설(화장시설, 장례식장 등)간 연계체계 구축하여 역할 수행
  - (중앙사고수습본부) 장사지원 관련 방역대책본부 협업체계 유지
    - \* (장사지원센터/1577-4129) 화장시설 예약지원 및 장사시설 이용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청 시 현장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장례지침개정 및 관리, 장례비용 지원
  - (시·도/시·군·구) 유족에게 장사방법(설명)\*, 화장시설 이동 시 운구 요원 및 운구차량 동원, 개인보호구\*\* 제공(유족, 시신처리자 등),

시설·장비(의료기관, 운구차량,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방역소독 등

\* 사망자 연고자에게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화장) 설명

\*\*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 가운, 장갑, 눈 보호구, 안면보호구, 장화 등

- (의료기관) 유관기관(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자체, 장례식장 등) 상황 통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시신처리(붙임1 참조)

- (장례식장) 시신처리 지원, 화장시설 운구 지원, 장례절차 진행

※ (사)한국장례협회 : 장례식장 수급 및 원활한 장례절차(운구차량 등) 지원

- (화장시설) 사망자 화장예약 시 상시 가동

## □ 평상시 업무

- (중앙사고수습본부)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협조체계 유지
- (중앙방역대책본부) 보건소를 통해 환자 가족에게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화장)을 권고토록 안내

## □ 임종 임박

- (의료기관) 환자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여부를 확인한 후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 대기 요청
  - 가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서 환자 면회 가능
  - 환자 가족에게 사망 시 감염방지를 위한 시신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함
  - 보건소(개인보호구 지원, 방역소독 등) 등에 상황 통보

## □ 사망

- (필수사항)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족과 고인의 마지막 작별을 고향 수 있도록 충분한 애도시간\* 보장
  - \* 애도시간은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 (보건소) 유족에게 先 화장 後 장례 권고 안내
- (의료기관) 중앙방역대책본부, 보건소(개인보호구 지원, 방역소독 등) 등에 상황 통보, 유족에게 사망원인 설명하고 시신처리 시점 협의
  - 유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망자 상태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조치(격리병실 외부 CCTV도 가능)
  - 확진환자일 경우, 유족과 협의된 시점에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의료인이 불임1에 따라 시신처리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의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두거나 확진환자에 준하여 시신처리 후 안치실에 안치  
⇒ 검사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 음성이면 일반사망자로 처리
- \* 일반 시신도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진환자 시신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권고

○ (장례식장) 시신처리 및 입관 지원

- 입관 시 밀봉을 열지 말고 그대로 관에 안치 후 뚜껑을 덮어서 밀봉

○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 · 화장시설 · 장례식장 등 협조 요청

- (장사지원센터) 화장시설 예약지원 및 장사시설 이용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 보건소에 유족에게 장사방법(화장)을 설명하도록 통보

○ (시·도/시·군·구) 보건소에서 환자 가족에게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화장)을 권고, 시설 · 운구차량 사후 소독 준비, 개인보호구 지급, 화장 및 장례절차 유족 협의, 화장시설 예약 협조 등

- 화장 시 동행 유족 현황 파악,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확보

□ 화장 및 장례

○ (의료기관) 유족과 협의한 시점에 밀봉된 시신을 병실에서 반출

○ (장례식장) 병실에서 반출된 시신을 화장시설로 운구 시 지원

- 화장 종료 후 유족 협의에 따라 장례절차 진행

- \* 상황에 따라 장례식장 안치실에 안치하였다가 화장시설로 운구(안치실에 안치한 경우 안치실 사후 소독)

○ (시·도/시·군·구)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동원, 화장 시 동행 유족 · 운구요원 · 화장요원 등에게 개인보호구 지급, 운구차량 · 화장시설 등 소독

- 장례종료 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결과 보고(시·도)

- (중앙사고수습본부) 장례지원반 운영을 통한 장사지원 협업체계 유지
  - 중앙사고수습본부-지자체 등 연계·협조체계 구축·운영, 상황 전파 등
  - 사망자 화장시설 예약 지원 및 장사시설 이용안내
  - ※ 장사지원센터(한국장례문화진흥원) 1577-4129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개정 및 관리, 장례비용 지원
  -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사방법이 제한된 사망자의 장사비용 지원
  - \* 장례비용은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지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망자 장례비용 지원계획(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3984,3.20.)참조)
- (시·도/시·군·구) 유족 및 장례지원 유관기관 연락체계 유지 및 행정지원
  - 공설 화장시설, 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등 운영·관리체계 유지
  - ※ 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이 있는 경우 해당 장례식장 우선 이용, 없는 경우 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이용
  - 개인보호구 지원 및 방역소독 철저
  - 화장에서 장례 종료시까지 장례지원 및 진행상황 확인, 결과 보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잠재적인 전염성이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표준주의' 원칙을 적용하며, 일부 감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혈액, 체액 또는 시신의 조직과 접촉할 때 감염될 수 있으므로 **노출 최소화** 방식으로 시신을 처리

## 1. 일반 권장사항

### 가. 개인위생 및 개인보호구

- 모든 직원 대상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개인위생 철저
- 시신 취급 시
  - 시신의 혈액 또는 체액에 닿지 않도록 주의
  - **개인보호구 착용** : 장갑, 일회용 긴팔 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보건용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 사용
  - 상처 및 찰과상 등이 있다면 방수 드레싱 또는 방수 밴드를 붙일 것
  - 시신 취급시 담배를 피우지 말고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 말 것
  - 엄격한 개인위생 준수 : 시신 취급시 얼굴을 만지지 말고 철저한 손 위생 실시
  - 시신 처리과정에서 주사침 등에 의한 손상을 예방
- 시신을 취급한 후 개인보호구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손 위생 실시

#### ☞ [부록 1]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 나. 혈액 또는 체액에 사고 노출 예방

- 시신의 혈액 또는 체액이 경피 상처 또는 점막에 노출된 경우 다량의 물로 세척
- 노출 사례는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노출된 직원은 적절한 상처관리 및 노출 후 관리를 위해 즉시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함

### 다. 폐기물 관리

#### ☞ [부록 2] 코로나19 폐기물 관리

### 라. 세탁물 관리



- 사용된 모든 린넨은 표준격리로 처리
- 사용된 린넨은 린넨을 취급하는 사람의 오염을 방지하고 해당 구역에서 잠재적으로 오염된 보풀로 인한 에어로졸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휘젓기로 최대한 적게 다루어야 함
- 혈액 또는 체액으로 오염된 린넨은 뜨거운 온도에서 (70℃ 이상) 세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새로 준비한 희석한 가정용 표백제(표백제 1: 물 49 혼합)에 세탁 전 30분 동안 담가둬야 함

## 2. 환경관리

### 가. 소독액 희석

- 오염된 환경 표면은 1:49로 희석한 가정용 소독제로 닦아내고 15-30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물로 닦아 내야 함
  - ※ 희석배율 5.25% 차아염소산나트륨 100 ml : 물 4900 ml
- 금속표면은 70% 알코올로 닦을 수 있음
- 혈액 및 체액으로 눈에 띄게 오염된 표면은 1:4로 희석한 가정용 소독제로 닦아내고 10분간 방치한 후 물로 닦아 내야 함
  - ※ 희석배율 5.25% 차아염소산나트륨 100 ml : 물 400 ml
- 차아산나트륨 용액은 매번 새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함

### 나. 안치실

- 항상 깨끗하고 적절하게 환기되어야 하며, 조명이 적절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 실시
- 부검실, 시신 보관실, 유족 참관실에서는 흡연, 음주, 식사가 금지

## 3. 시신 관리

### 가. 병실

- 시신을 처리하는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
- 시신의 모든 튜브, 배액관 및 카테터는 제거함
- 정맥 카테터 및 기타 날카로운 장치를 제거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제거 즉시 폐기물 용기에 버려야 함

- 상처 배액 부분이나 비늘 상처 부분은 소독하고 체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표면을 비투과성 물질로 처치
- 구강 및 비강의 분비물은 필요한 경우 부드럽게 흡인하여 제거
- 체액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신의 구강, 비강 및 직장을 막아야 함
- 시신은 닦아내고 건조시켜야 함
- 시신은 먼저 150  $\mu\text{m}$  두께의 누출방지 비닐백에 넣고 밀봉하여야 하며, 절대 핀은 사용하지 않음
- 비닐백에 넣은 시신은 다시 시신백에 넣고 시신백 외부는 희석된 가정용 표백제 (차아산염소 산나트륨 1: 물 4)로 닦아내고 건조시킴

#### 나. 부검실

- 부검실에 온 모든 시신은 잠재적인 감염원이므로 부검의 및 기타 지원 직원은 항상 부검수행 시 표준격리 원칙을 지켜야 함
- 직원을 부주의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수행해서는 안되나, 특별한 이유로 부검을 실시하려면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함
  -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권장되는 기술과 절차를 사용하여 부검의에 의해 수행
  - 부검실에서 허용되는 인원은 수술과 직접 관련된 인원으로 제한
  - 1:49로 희석한 가정용 소독제로 피부 표면을 닦아내고 150  $\mu\text{m}$  두께의 누출방지 투명 비닐백에 넣고 다시 불투명한 백에 넣고 지퍼로 닫아야 함
  - 시신백 외부는 1:4로 희석한 가정용 소독제로 닦아서 건조시키고 적절한 경고 태그를 외부에 부착

#### 다. 안치실

- 모든 시신은 식별 레이블 및 범주 태그로 식별가능하게 해야 함
- 시신은 밀봉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시신을 절대 개방해서는 안 됨
- 시신은 약 4 $^{\circ}\text{C}$ 로 유지되는 냉장실에 보관

※ 참고문헌 : Singapore Department of Health Hospital Authority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Precautions for Handling and Disposal of Dead Bodies. (Feb. 2020)

## [참고] 싱가포르 시신관리 처리 규정 (category)

표준 예방 조치 외에도 추가 예방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 범주	밀봉	유족 참관	방부처리	염습	시신처리
범주 1	필요 없음	허용	PPE 사용하에 허용*	PPE 사용하에 허용*	매장 또는 화장 선택
범주 2	필수	허용	허용 안됨	PPE사용하에 허용*	화장 권함
범주 3	필수	허용 안됨	허용 안됨	허용 안됨	화장 권함

\* PPE(개인보호구) : 일회용 장갑, 발수성 가운 및 보건용 마스크 등 포함

범주 1 : 범주 2, 3 이외 감염병

범주 2

- 1)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HIV)
- 2) Hepatitis C
- 3) Creutzfeldt-Jacob disease (CJD) without necropsy
- 4)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 5) Avian influenza
- 6)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 7) Novel Coronavirus Infection, and
- 8) Others : 감염관리 의사, 감염 관리 책임자 또는 미생물학자가 조언한 다른 전염병 포함

범주 3 : 표준 예방 조치 외에도 엄격한 예방 조치 필요

- 1) Anthrax
- 2) Plague
- 3) Rabies
- 4) Viral haemorrhagic fevers
- 5) Creutzfeldt-Jacob disease (CJD) with necropsy, and
- 6) Others : 감염관리 의사, 감염 관리 책임자 또는 미생물학자가 조언한 다른 전염병 포함

## 부록 1

#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 □ 적용범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 확진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대응 과정 전반
  - 검역, 이송, 역학조사, 선별진료, 진료, 처치, 검체채취 및 검체이송, 검사, 수술, 기구관리, 환경관리, 사체관리 등

### □ 주요내용

- 개인보호구의 종류, 선택, 착·탈의 및 주의사항, 의료폐기물로 배출





### □ 사용 원칙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제품을 제외하고 일회용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는 반드시 제조사 권고에 따라 소독 또는 멸균 처리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또는 공기매개주의)를 포함한 감염관리 방법 준수
-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려면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이 중요함
  - 감염원과 접촉 전에 착용(예: 환자 접촉 전, 격리병실 밖)
  - 착용 할 때 보호구별 착용 방법 준수(특히, 호흡기보호구의 밀착 상태)
  - 사용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병원체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착용 상태에서 환자 이외의 주변을 접촉하여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벗을 때 본인의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제거(예: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무조건 오염으로 간주하여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버려 폐기되도록 함
- 모든 개인보호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파손되거나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사용·보관하지 말고 폐기
- 사용한 개인보호구 중 재사용이 불가피하고 소독 처리가 가능한 장비에 한하여 적절한 소독 처리 후 사용
- 눈에 보이지 않게 손과 신체 일부, 의복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구를 벗은 후에 항상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과 개인위생 철저

### □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용도, 상황별 권장범위

- 개인보호구는 호흡기, 눈, 손, 발을 포함한 전신과 의복을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고려하여 선택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마스크(N95 또는 KF94 이상),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장화 또는 신발커버 등
- 개인보호구는 질환별 또는 감염경로, 감염 노출 상황·행위, 용도에 맞게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
- 개인보호구별 특성과 용도

보호구	위해요소	특성 및 용도(indications for use)	참고사진
일회용 장갑 (Glove)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 오염 방지</li> <li>• 노출정도를 고려하여 재질 선택</li> <li>• 파우더 알러지 있을 경우 파우더 없는 제품 또는 나이트릴 제품 사용</li> </ul>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Gown)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튀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보호구	위해요소	특성 및 용도(indications for use)	참고사진
전신보호복 (Coveralls)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튀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덧신 (Shoe covers)			
장화 (Boots)	혈액, 체액이 신발에 튀	신발덮개 대신 착용 • 바닥이 젖거나 오염이 심할 경우 • 노출위험에 따라 선택	
모자 (Hair cap)	머리의 오염	비말이 머리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	
고글 (Goggle)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튀	눈의 점막 오염 방지 고글 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후 사용, 보관	
안면보호구 (Face shield)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튀	- 눈의 점막과 안면부 오염 방지 - 노출 위험 정도에 따라 고글 대신 착용 - 안면보호구 재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호흡기보호구 : 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 코, 입 점막을 통해 호흡 시 병원체 입자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 - 적용상황 예 : • 의심/확진환자 격리병실 입실 시(의료 종사자, 방문객 포함한 모든 출입자) • 기침유도 시술 시 • 에어로졸 생성 처치 시 • 의심/확진환자 이송 시 등	
호흡기보호구 : PAPR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 코와 입의 점막을 통한 감염원 흡입 방지 - 전지충전, 필터교환, 장비 소독 등 철저한 점검, 관리가 필요함 - 파손, 오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사전 수리, 교체 또는 폐기하여야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하면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구분	상황, 행위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		눈 보호
		수술용 마스크*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sup>1)</sup>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전신보호복 (덧신포함)
검역	검역(검역조사)		●		●		
	검역(역학조사)		●		●	● (선택 사용 가능)	●
선별 진료소	선별진료소 접수, 안내		●		●	●	
	선별진료소 진료, 간호		●		●	● (선택 사용 가능)	●
이송	이송(구급차 운전자) <sup>2)</sup>		●		●		
	확진/의심 환자 이송(검역관 보건소직원 응급구조사 등)		●		●	● (선택 사용 가능)	●
	의심환자 동승 보호자	●					
진료	확진/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등		●		●	● (선택 사용 가능)	●
	에어로졸 생성 처치 <sup>3)</sup>		● (선택 사용 가능)		●	● (선택 사용 가능)	●
	검사(X-ray 등 영상의학검사)		● (선택 사용 가능)		●	● (선택 사용 가능)	●
	호흡기 검체 채취		● (선택 사용 가능)		●	● (선택 사용 가능)	●
검체 관리	검체 취급(실험실, 검사실 등) <sup>4)5)</sup>		● (선택 사용 가능)		●	● (선택 사용 가능)	●
	검체 이송(파손없이 포장된 검체)	●			●		
장래	사체 이송, 안치		●		●	● (선택 사용 가능)	●
청소·소독	청소·소독 <sup>6)</sup>		●		●	● (선택 사용 가능)	●
폐기물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		●	● (선택 사용 가능)	●
	의료폐기물 운반	●			●	●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따른 수술용 마스크로 제한.

- 1) 의심·확진환자 구역의 진료, 처치, 간호, 검사, 청소 등을 시행할 경우 장갑 파손 위험, 감염 노출 위험을 고려하여 이중장갑 착용
- 2)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필요 시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 착용
- 3)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처치는 기관삽관(endotracheal intubation), 심폐소생술, 기관지내시경술, 기도분비물 흡인, 기관관리(tracheostomy care), 사체부검, 비침습적 양압환기(Continuous positive air pressure), 분무요법(nebulizer therapy), 가래배출 유도 등의 처치, 상황, 행위를 말함
- 4) 검체 취급 실험실·검사실에서 개인보호구 선택,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에 따름
- 5) ClassII급의 생물안전작업대 작업 시 가운(긴팔), 일회용 장갑 착용  
Lee H, Ki C-S, Sung H, et al. Guidelines for the Laboratory Diagnosi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in Korea. Infection & chemotherapy. 2016;48(1):61-69.)
- 6) 병실, 구급차 등 청소·소독 시에 해당하며, 상황에 따라 방수성 앞치마 등 착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예시<sup>1)</sup>

-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또는 전신보호복(레벨D<sup>2)</sup>) 선택 사용 가능



- 1)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하절기 운영 수칙 배포」(중앙방역대책본부-4920('20.6.10)) 참고
- 2) 우리나라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미국의 방식을 따라 레벨 A~D로 구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레벨 D단계의 보호장비는 최소한의 피부와 호흡기 보호가 필요 시 착용하게 되며, 일회용 보호복(후드 타입), 일회용 마스크(N95 또는 KF94 등급의 마스크), 장갑, 고글 등으로 구성

- 4종 또는 전신 보호복 충족 요건

보호대상	개인보호구	필수여부	개인보호구 충족요건 또는 적용상황
호흡기	일회용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	-
	PAPR(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대체)	필요 시	에어로졸 발생되는 처치 시(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대체)
눈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	김서림방지 및 긁힘 방지 코팅 처리
전신 · 의복	일회용 전신보호복	○	방수성 또는 2-3시간 이상 방수 유지 혈액 및 바이러스 불침투 되는 제품
	일회용 장갑	○	손목까지 덮을 수 있는 장갑, 두 겹 착용
	일회용 덧신(신발덮개)	○	발목 높이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일회용 덧가운/앞치마	필요 시	몸통에서 종아리까지 덮을 수 있는 보호구 예) 투석이나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 착용



□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 안내

○ 개인보호구 4종 착의 예시 순서

				
<p>1. 개인보호구를 준비한다.</p>	<p>2. 손 위생을 시행한다.</p>	<p>3. 가운을 입는다.</p>		
				
<p>4. 마스크를 착용한다.</p>	<p>5.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접촉 부위를 눌러 밀착시킨다.</p>	<p>6. 양손으로 마스크를 움켜쥐고, 흡입/배기하면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p>		
				
<p>7. 고글이나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p>				<p>8. 장갑을 끼고 옷소매 위를 덮도록 주의하여 착용한다. (경우에 따라 장갑을 한 벌 더 착용할 수 있다.)</p>

○ 개인보호구 4종 탈의 순서

				
<p>1. 장갑을 벗는다. 한 손으로 반대편 장갑을 벗겨 손에 쥐고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 말아서 버린다.</p>		<p>2. 속장갑을 착용한 경우 속장갑을 소독하고, 속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손 위생을 시행한다.</p>		
				
<p>3. 가운의 환자 접촉 부위를 안으로 말아주면서 신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탈의한다.</p>		<p>4. 손 위생을 시행한다.</p>		
				
<p>5. 고글 혹은 안면보호대 앞면을 만지지 않고 제거한다.</p>	<p>6. 손 위생을 시행한다.</p>		<p>7. 마스크를 제거한다.</p>	
				
<p>8. 손 위생을 시행한다.</p>		<p>9. 속장갑(착용한 경우)을 제거한다.</p>		

□ 전신보호복 착용 및 탈의 안내

구분		KF94 등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전신보호복 사용 시 순서	PAPR <sup>1)</sup> 과 전신보호복 사용 시 순서
착의 (착용) 순서	1	손위생	손위생
	2	(속)장갑	(속)장갑
	3	전신보호복 하부	전신보호복
	4	신발커버(또는 장화)	신발커버(또는 장화)
	5	KF94 등급의 호흡기보호구	전동식호흡기보호구(PAPR) <sup>1)</sup>
	6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후두
	7	전신보호복 상체후드 착용 및 여밈	전동식호흡기보호구와 후두 연결
	8	(겉)장갑	(겉)장갑
(격리실 등 전염력이 있는 구역 밖에서 탈의)			
탈의 <sup>2)</sup> (제거) 순서	1	손위생	(겉)장갑
	2	눈에 보이는 오염 제거	장갑 소독
	3	신발끈 풀기	전동식호흡기보호구(PAPR)
	4	(겉)장갑	후드
	5	보호복 및 신발	전신보호복
	6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7	KF94 등급의 호흡기보호구	(속)장갑
	8	(속)장갑	손위생
	9	손위생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알림·자료→ 홍보자료→ 영상자료→ Level D 개인보호복 착탈의법 영상 참조

1) PAPR과 후두 착·탈의 순서는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조사 권고에 따름

2) 보호구 벗는 과정에서 장갑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하나씩 제거할 때마다 손소독 후 다음 보호구를 탈의(제거)하는 것이 유용함

□ 개인보호구 착의(착용) 및 제거 원칙

○ 착의(착용)

-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에 따라 미리 물품을 준비하여 올바른 착용\* 순서와 방법으로 착용

\* 머리는 단정히 묶거나 고정하고 시계, 장신구 등을 제거하여 오염 방지

\* 탈수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전 수분을 보충하고 미리 화장실에 다녀옴

\* 착용 후 오염, 파손이 있을 경우 처치, 행위 사이에 개인보호구 교체

\* 속장갑이 젖을 정도라면 근무자 교대

○ 탈의(제거)

-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예: 격리병실 밖의 개의실 등)에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감염원이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바로 버림

## 부록 2

## 코로나19 폐기물 관리

<환경부 3.2.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

### 1] 격리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 【발생 및 보관】

- **(배출)** 배출장소에서 바로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병원내 이동 최소화)하고 밀폐(전용봉투+전용용기 2중 밀폐: 붙임2 참조)
  - \* 폐기물 투입 전과 밀폐 후 소독 처리
  - \*\* 전용봉투가 찢어지거나 외부로 누출될 우려가 없는 의료진 도는 폐기물 수거업체 등이 사용한 개인보호구 (마스크, 보호복) 등에 대해, 합성수지 전용용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합성수지 전용용기 대신 골판지 전용용기를 사용할 수 있음
- 확진환자의 남은 음식물도 구분하여 격리의료폐기물 용기에 투입 후 처리
  - ※ 병원 전체가 격리(동일집단격리)되어 발생 음식물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소독 후 일괄 소각 처리(지자체 공공소각장 또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 가능 직물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온수세탁 후 재사용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커튼 등 세탁 가능 직물은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온수세탁
  -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베개, 쿠션 또는 카펫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
- ⇒ 자세한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소독 안내 지침 참고

- **(보관)** 해당 폐기물은 당일 반출 원칙, 병원 내 보관 최소화
  - 병원내 보관 시 지정된 보관창고에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 조직물류 형태는 전용 냉장시설(4℃ 이하)에 반드시 보관하고, 부패위험이 없는 격리폐기물도 최대한 냉장보관이 원칙
  - 보관창고는 매일 소독하고,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은 구조 및 외부인 출입 제한

#### 【수집·운반】

- 전용용기에 밀폐 포장한 상태로 임시 보관장소를 경유하지 않고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 직송하여 소각처리
- 밀폐된 적재함에서 운반 중 4℃ 이하 유지, 적재함 사용 시마다 약물소독

**【 소각처리 】**

○ 해당 폐기물 입고 즉시 전용용기에 담긴 상태로 바로 소각로 투입

※ 처리 상황과 최종 처분여부는 환경공단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 현행규정보다 강화된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관리방안 】**

구분	배출자 보관	운 반	처 리
격리폐기물 현행규정	○ 7일까지 보관 ○ 합성수지 전용용기 ○ 전용 보관창고 (조직물류 냉장보관) ○ 보관창고 소독	○ 냉장운반 ○ 임시보관(2일)	○ 처리기한 2일 ○ 전용보관 창고 (조직물류 냉장보관)
격리폐기물 관리강화	○ <b>당일 위탁처리</b> (1~2일 이내 보관) ○ <b>냉장보관 원칙</b> ○ <b>전용용기 투입전·후 소독</b>	○ <b>임시보관 금지 당일 운반</b> ○ 사용시 마다 <b>차량약물 소독</b>	○ <b>당일 소각처리</b>

※ 단, 특별자치도와 육지와 연결이 되지 않은 도서 지역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 보관(4일 이내)하되 신속 운반·처리(2일 이내)

**② 생활치료센터 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 확진환자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을 **격리의료폐기물**로

**①소독·밀봉 배출, ②상시소독, ③전량 일일소각 처리**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생활 및 의료지원이 실시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으로 간주

- (배출) 환자가 직접 폐기물을 소독하고 전용봉투 및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밀봉한 후 문전 배출

- (수거·보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관리인력이 문전 수거 및 소독 후 지정한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

\*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별도 공간, 임시 컨테이너 등)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매일 1회 이상 약물로 소독하여야 함

- (운반·처리) 지정된 수집·운반업체에서 보관장소에 보관된 폐기물을 지정된 처리업체에 **당일 운반하여 소각처리**

○ **확진환자와의 접촉 없이**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로 강화하여 **소각처리**

- 센터 내 격리의료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소독·밀봉하여 **전량 일일소각** 처리하되 합성수지 전용용기가 아닌 **골판지 전용용기 사용**

○ 생활치료센터 전담 수거·처리업체 지정·관리

- 유역·지방환경청은 생활치료센터 전담 수거·처리업체를 지정하고, 일일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확인 후 환경부로 보고

③ 자가격리자 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 자가격리자에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을 무상지급

- 유역·지방환경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봉투형 전용용기, 소독약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 발생한 폐기물을 매뉴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출·처리

① 증상 미발생 시 발생한 폐기물의 경우

- (배출) 배출자제를 원칙으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배출하며, 자가 격리자는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고 보건소에 연락하여 배출

※ 전용봉투가 없는 경우 종량제봉투를 활용하여 2중 밀폐

- (수거·처리)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하는 지자체 보건담당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군·구 생활폐기물 담당부서(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서 수거하여 생활폐기물로 소각처리

※ 다만 지자체 여건상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이 소각이 아닌 매립 등의 방식일 경우 기존 방식으로 안전하게 처리

②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또는 확진판정 받은 자가 격리장소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의 경우

- (배출) 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보관

- (수거·처리) 보건소로 폐기물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보건소에서 계약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통해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수거하여 당일 소각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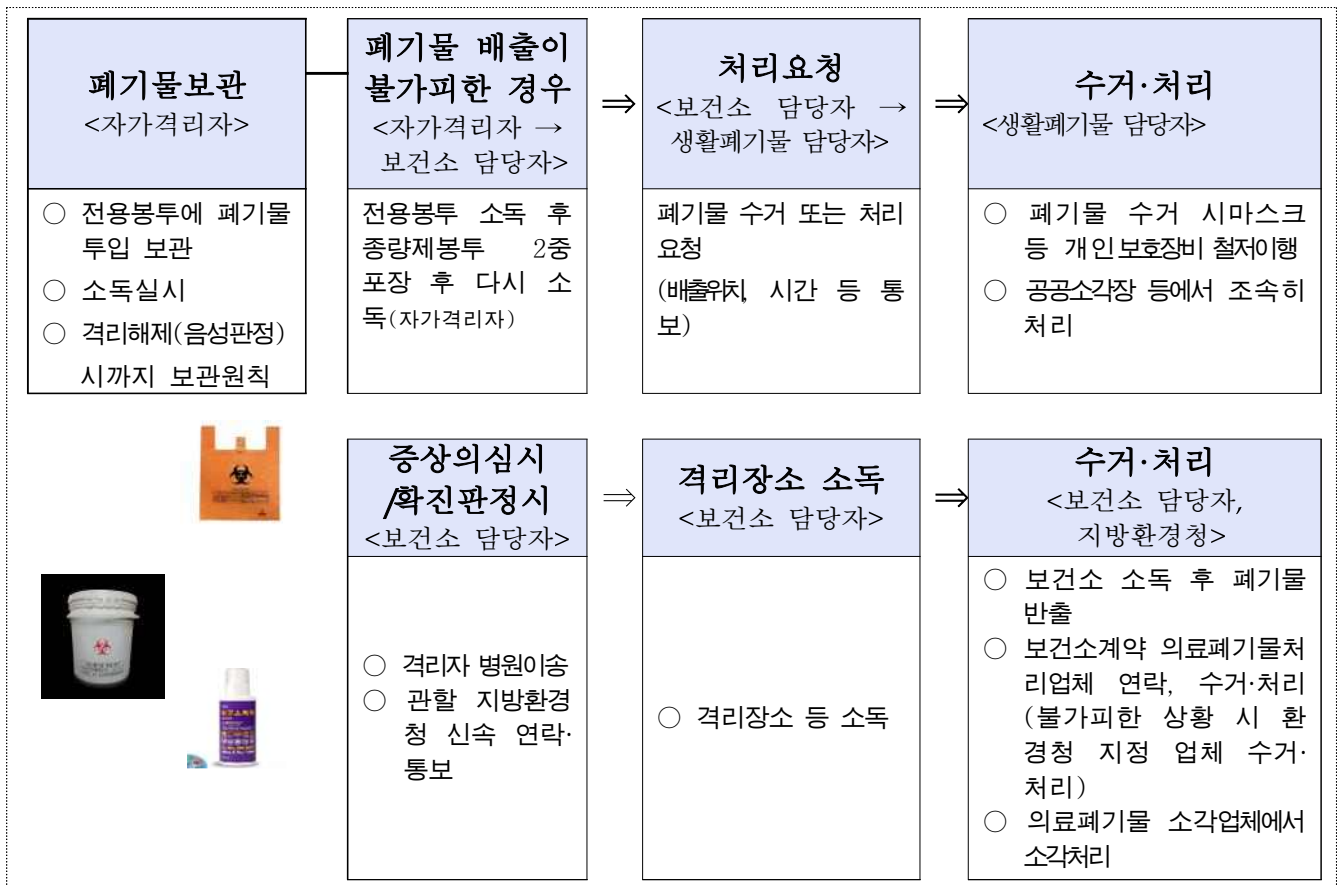
※ 발생량 과다로 당일처리가 어려운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지방(유역)환경청에 연락하여 처리

※ 자가격리가 해제된 경우(음성 판정)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보관중인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여 소각처리

#### ④ 확진환자 방문지 및 다중이용시설 폐기물

- 환자에 노출된 지역은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라 적정 소독 처리한 후, 다음날까지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 권고하며, 관련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
  - 소독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진복, 마스크 등은 의료폐기물로 처리
-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소독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이중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

#### <자가격리자 폐기물 보관·처리 체계>



## ⑤ 폐기물 종사자 지원 및 사고예방

- (폐기물 종사자) 의료폐기물 지도·단속 요원, **코로나-19**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 종사자는 **개인보호구\*** 철저 사용으로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 개인 소독약품, 마스크, 고글, 보호장갑 및 일회용 가운 등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권장하는 보호구 착용

- (환자이송 119 구급대 등) **코로나-19** 의심환자 등의 수송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시·도)

- (운송사고 예방)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소독 강화, 안전운행 수칙 준수 및 사고 예방관리 철저(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

- (특별점검) 기관장 전담제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 종합병원 : 유역·지방환경청

- 종합병원 외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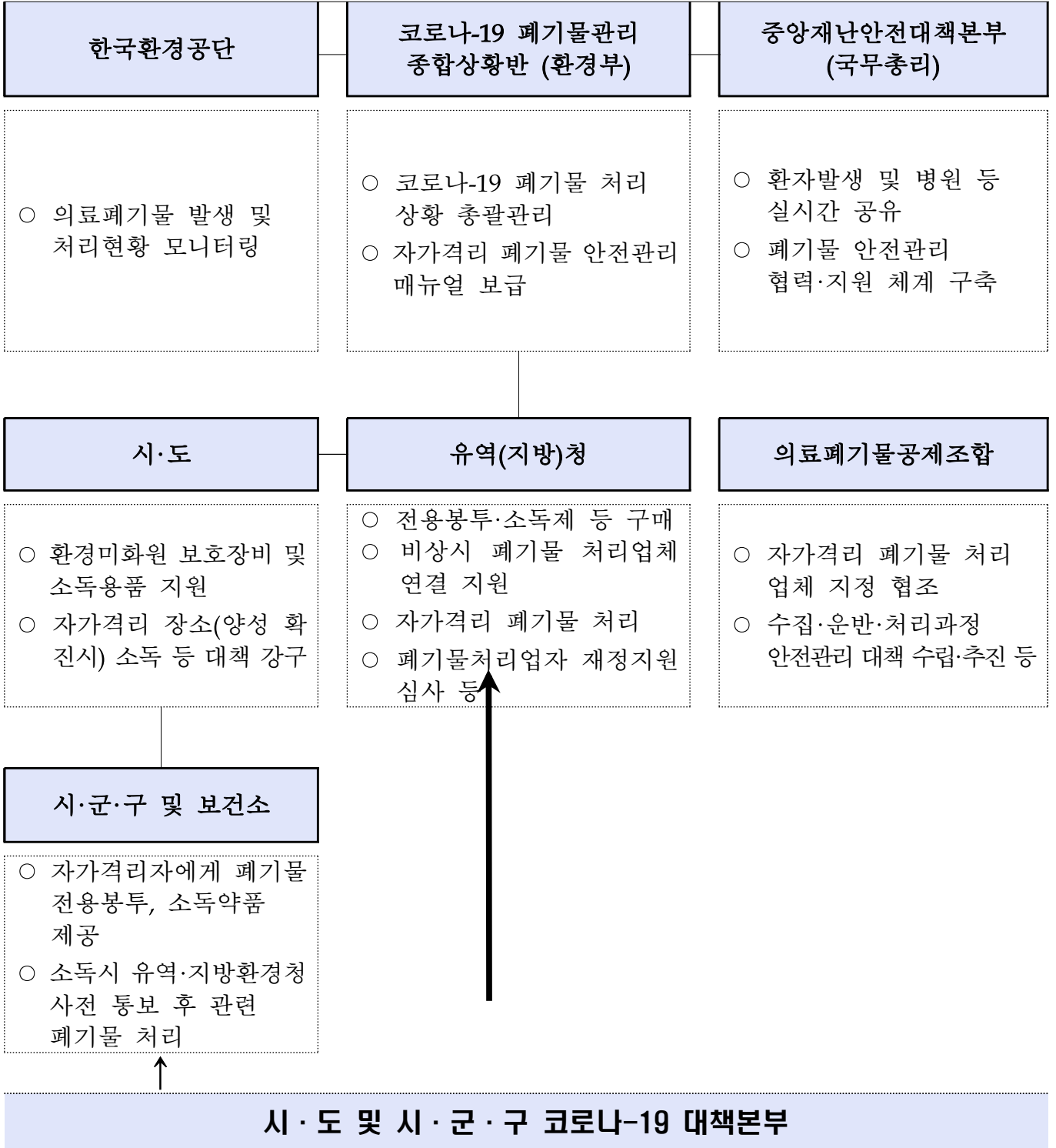
- 수집·운반업체, 소각처리업체 : 유역·지방환경청 1:1 전담 관리



**참고 1**

**코로나바이러스-19 의료폐기물 관리체계도**

《 관리체계도 》



**참고 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및 개인보호장비**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p>의료폐기물 전용봉투</p>	<p>합성수지 전용용기</p>	<p>골판지 전용용기</p>

□ 개인보호구

<p>장갑 보호복</p>	
<p>마스크</p>	
<p>고글/안면보호대</p>	

### 참고 3

##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물품]

-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물품은 ①폐기물 소독제 ②의료폐기물 전용봉투(주황색 봉투) ③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 ④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 입니다.

### [생활치료센터 격리자 발생 폐기물 배출방법] - 격리의료폐기물

- 격리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분리배출 필요 없이 제공되는 전용봉투(주황색 봉투)에 담기 전 전용봉투 내부를 1차 소독, 폐기물을 담은 후 2차 소독하여 반드시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묶어주시고,
- 제공되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에 전용봉투(주황색 봉투)를 넣고,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의 뚜껑을 닫기 전 소독 후, 뚜껑을 닫아 밀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폐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은 격리실 문 앞에 배출하기 전 외부 전체를 1회 더 소독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의 뚜껑이 완전히 닫힌 후 배출되어야 수거가 가능하며,
- 배출된 폐기물은 매일 수거자가 수거하여 '생활치료센터' 내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주황색 봉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

**[생활치료센터 운영인력 등 발생 폐기물 처리방법] - 일반의료폐기물**

- 운영인력 사용공간 및 숙소 등 발생 폐기물, 확진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폐기물(도시락 및 구호물품 박스 등)은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하며,
- 분리배출 없이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주황색 봉투)에 넣고 밀봉하기 전 소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 소독 후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전용봉투(주황색 봉투)를 묶은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에 넣어 밀봉해야 합니다.
- 밀봉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는 수거 전 외부 전체를 1회 더 소독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배출된 폐기물은 매일 수거자가 수거하여 '생활치료센터' 내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p>의료폐기물 전용봉투(주황색 봉투)</p>	<p>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p>

**[생활치료센터 내 폐기물 임시보관 및 운반·소각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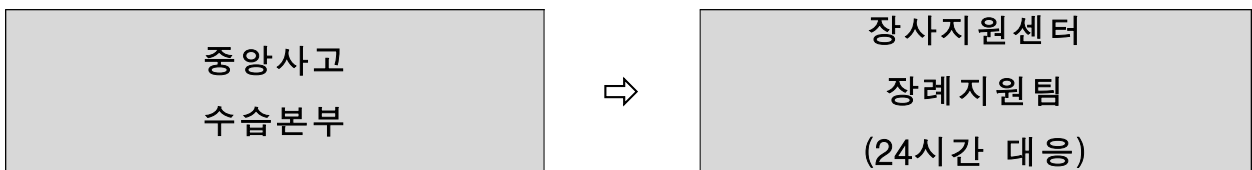
- 별도 (임시)보관장소는 1회/일 소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소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의료폐기물은 매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수집·운반, 소각)에서 운반 및 소각처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역할**

- (중앙사고수습본부) 장사지원 관련 방역대책본부 협업체계 유지
  - 신속하고 원활한 장사지원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중수본-지자체(시·도, 시·군·구) 교류, 협조체계 유지
- (장사지원센터)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청 시 현장 지원 등
  - 현장출동 및 상황 전파, 초기 운구 및 대응
  - 화장시설 예약 지원, 장례절차 및 장사시설 이용 안내

**□ 장례지원팀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 2인 1조, 2팀으로 구성
- 장사지원센터
  - 장례지도사 포함, 2인 1조, 2팀



※ 장사지원센터 대표전화 : 1577-4129

**붙임3**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운영 의료기관**(<sup>20.4월 기준</sup>)

연번	시도	시군구	병원명	전화번호 (대표번호)	장례식장 설치여부	지정장례 식장여부
계	16	28	29		29	17
1	서울	종구	국립중앙의료원	02-2260-7114	○	○
2		종로구	서울대병원	1588-5700	○	○
3		종량구	서울의료원	02-2276-7000	○	○
4		도봉구	한일병원	02-901-3114	○	○
5		동작구	중앙대병원	1800-1114	○	○
6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051-240-7000	○	
7		연제구	부산의료원	051-507-3000	○	○
8	대구	서구	대구의료원	053-560-7575	○	○
9		중구	경북대병원	1666-5114	○	
10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의료원	032-580-6000	○	○
11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1577-2299	○	
12		중구	인하대병원	032-890-2114	○	○
13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1899-0000	○	
14		동구	조선대병원	062-220-3114	○	○
15	울산	동구	울산대병원	052-250-7000	○	○
16	대전	중구	충남대병원	1599-7123	○	○
17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031-810-5114	○	
18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1688-9151	○	
19			분당서울대병원	1588-3369	○	○
20	강원	강릉시	강릉의료원	033-610-1200	○	○
21		춘천시	강원대병원	033-258-2000	○	○
22	충북	청주시	충북대병원	042-269-6114	○	
23	충남	천안시	단국대천안병원	041-1588-0063	○	
24	전북	전주시	전북대병원	063-250-1114	○	
25		익산시	원광대병원	031-390-2300	○	○
26	전남	목포시	국립목포병원	061-280-1114	○	
27	경북	경주시	동국대경주병원	054-748-9300	○	
28	경남	진주시	경상대병원	055-750-8000	○	○
29	제주	제주시	제주대병원	064-717-1114	○	

**붙임4**

**전국 화장시설 현황('21.1월 기준)**

연번	시도	시군구	화장시설	전화번호 (대표번호)	비고
계	17	58	60		1(사설)
1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	02-3498-2581	
2	부산	금정구	부산영락공원	051-790-5000	
3	대구	수성구	대구명복공원	053-743-3880	
4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032-510-1900	
5	광주	북구	광주영락공원	062-572-4384	
6	대전	서구	대전시정수원	042-610-2300	
7	울산	울주군	울산하늘공원	052-255-3800	
8	세종	세종시	은하수공원	044-850-1330	
9	경기	수원시	수원시연화장	031-218-6500	
10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031-960-0236	
11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031-754-2268	
12		용인시	용인평온의숲	031-329-5900	
13	강원	춘천시	춘천안식원	033-261-7314	
14		원주시	하늘나래원	033-742-3584	
15		강릉시	솔향하늘길	033-660-3858	
16		동해시	동해시승화원	033-522-1451	
17		태백시	태백시화장장	033-550-2844	
18		속초시	속초시승화원	033-635-7023	
19		정선군	정선하늘터	033-560-3460	
20	인제군	인제종합장묘센터	033-462-6989		
21	충북	청주시	청주시목련공원	043-270-8578	
22		충주시	충주시시설관리공단	043-870-7867	
23		제천시	제천시영원한쉼터	043-644-6613	
24	충남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041-529-5141	
25		공주시	공주나래원	041-840-8980	
26		홍성군	홍성추모공원	041-633-7780	
27	전북	전주시	전주시승화원	063-239-2690	
28		군산시	군산시승화원	063-454-7950	
29		익산시	익산시정수원	063-859-3840	
30		정읍시	서남권추모공원	063-539-6726	
31		남원시	남원시승화원	063-632-5874	

연번	시도	시군구	화장시설	전화번호 (대표번호)	비고
32	전남	목포시	목포추모공원	061-272-0095	
33		여수시	여수시승화원	061-659-1795	
34		순천시	순천시립추모공원	061-749-6168	
35		광양시	광양시화장장	061-762-4449	
36		곡성군	청계원	070-8677-2232	사설
37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화장장	061-840-0586	
38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061-530-5141	
39		경북	포항시	포항시우현화장장	054-270-5815
40	포항시구룡포화장장			054-270-5960	
41	경주시		경주하늘마루	054-779-8547	
42	김천시		김천시화장장	054-430-1300	
43	안동시		안동장사문화공원	054-850-4780	
44	구미시		구미시추모공원	054-480-2320	
45	영주시		영주시화장장	054-633-9473	
46	상주시		상주시승천원	054-537-6393	
47	문경시		문경예송원	054-550-6507	
48	의성군		의성군공설화장장	054-833-1103	
49	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054-791-1888	
50	경남		창원시	창원시립상복공원	055-712-0920
51		창원시립마산화장장		055-712-0224	
52		진주시	진주시안락공원	055-759-3672	
53		통영시	통영시추모공원	055-650-4883	
54		사천시	사천시누리원	055-834-3001	
55		김해시	김해추모의공원	055-337-3946	
56		밀양시	밀양시공설화장시설	055-359-4634	
57		함안군	함안하늘공원	055-585-7182	
58		고성군	고성군공설화장장	055-670-2923	
59		남해군	남해추모누리	055-860-3681	
60		제주	제주시	양지공원	064-702-4065



**붙임5**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명단(21.1월 기준)**

시·도	시·군·구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전화번호
17	186	195개소	
서울 (14)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	02-2072-2020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장례식장	02-2262-4800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병원장례식장	02-797-4444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	02-2290-9442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장례식장	02-2030-7900
	종랑구	서울의료원장례식장	02-2276-7671
	도봉구	한일병원장례식장	02-901-3440
	노원구	태능성심병원장례식장	02-976-8811
	은평구	은평성모장례식장	02-2030-4444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장례식장	02-2650-5121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장례식장	02-860-3500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02-2258-5940
	강남구	서울의료원강남분원장례식장	02-3430-0226
	강동구	강동경희대병원장례식장	02-440-8800
부산 (14)	중구	(주)부산의사상조(메리놀병원장례식장)	051-465-1024
	서구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례식장	051-990-6444
	영도구	주식회사구민장례식장	051-416-0004
	부산진구	시민장례식장	051-636-4444
	동래구	프라임장례원	051-506-1022
	남구	부산성모병원장례식장	051-933-7480
	북구	한중프라임장례식장	051-305-4000
	사하구	사하구민장례식장	051-715-4441
	금정구	부산영락공원장례식장	051-790-5000
	연제구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051-607-2990
	수영구	좋은강안병원장례식장	051-610-9009
	사상구(3)	부산보훈병원장례식장	051-601-6785
	부산전문장례식장	051-312-4444	
	삼신전문장례식장	051-323-0044	
대구 (5)	동구	파티마병원장례식장	053-958-9000
	서구	대구의료원국화원장례식장	053-560-9552
	북구	칠곡경북대병원장례식장	053-200-2500
	수성구	한패밀리병원장례식장	053-760-8800
	달서구	대구보훈병원장례식장	053-625-4466
인천 (8)	중구	인하대학교장례식장	032-890-3180
	동구	인천의료원장례식장	032-580-6662
	미추홀구	금강장례식장	032-424-4455
	연수구	인천적십자장례식장	032-817-1024
	부평구	인천성모병원장례식장	032-517-0710

시·도	시·군·구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전화번호
	계양구	(주)세종병원장례식장	032-240-8444
	서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장례식장	032-290-3501
	강화군	강화장례식장	032-933-1024
광주 (5)	동구	조선대학교병원장례식장	062-220-3352
	서구	브이아이피장례타운	062-521-4444
	남구	남문장례식장	062-675-5000
	북구	구호전장례식장(주)행복드림	062-960-4444
	광산구	빛장례식장	062-452-4000
대전 (5)	동구	한국병원장례식장	042-638-4440
	중구	충남대학교병원장례식장	042-280-8181
	서구	을지대학교병원장례식장	042-611-3980
	유성구	유성한가족병원장례식장	042-611-9700
	대덕구	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장례식장	042-628-4440
울산 (5)	중구	동강병원장례식장	052-241-1440
	남구	울산병원장례식장	052-227-1024
	동구	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장례식장	052-250-8444
	북구	시티병원장례식장	052-280-8400
	울주군	울산하늘공원	052-255-3800
세종 (1)		조치원장례식장	044-866-4800
경기 (30)	수원시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장례식장	031-888-0114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장례식장	031-900-0444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장례식장	031-787-1500
	용인시	기흥장례식장	031-275-4444
	부천시	DS병원장례식장	032-666-1002
	안산시	(주)코스모스제일장례식장	031-406-2000
	남양주시	남양주한양병원장례식장	031-529-4440
	안양시(2)	(주)메트로병원장례식장	031-449-9000
		(주)안양장례식장에이에프피	031-456-5555
	화성시(2)	(주)봉담장례문화원	031-278-0404
		화성장례식장	031-355-8000
	평택시	농협연합장례식장	031-684-6444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장례식장	031-820-3468
	시흥시	시흥장례원	031-434-4114
	파주시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장례식장	031-940-9370
	김포시	뉴고려병원장례식장	031-998-4415
	광주시	삼육장례식장	031-760-3644
	군포시	지샘병원장례식장	031-389-3770
	오산시	오산한국병원장례식장	031-375-7600
	이천시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례식장	031-630-4478
양주시	양주장례문화원	031-863-4444	
안성시	(주)메디빌트성혜원	031-671-6500	

시·도	시·군·구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전화번호
	구리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장례식장	031-560-2430
	포천시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장례식장	031-539-9446
	하남시	하남시마루공원	031-795-2222
	여주시	여주장례식장	031-885-1919
	양평군	양평장례식장	031-772-1024
	동두천시	이담장례식장	031-866-7300
	가평군	가평군농협효문화센터	031-581-4442
	연천군	연천군보건의료원장례식장	031-832-4474
강원 (11)	춘천시	강원대학교병원장례식장	033-254-5611
	원주시	원주의료원장례식장	033-760-4644
	강릉시	강릉의료원장례식장	033-610-1444
	동해시	중앙장례식장	033-521-3700
	속초시	강원도속초의료원장례식장	033-630-6016
	삼척시	하늘정원장례식장	033-575-4441
	홍천군	홍천군장례식장	033-436-1919
	철원군	철원병원장례식장	033-452-0044
	화천군	화천군공설장례식장	033-442-0452
	양구군	양구군장례식장	033-480-2576
	양양군	양양장례문화원	033-671-0404
충북 (11)	청주시	청주시립장례식장	043-291-4444
	충주시	영광장례식장	043-845-4444
	제천시	제천서울병원장례식장	043-644-4422
	보은군	보은농협장례식장	043-543-3360
	옥천군	옥천성모장례식장	043-733-0808
	영동군	영동장례식장	043-744-0454
	증평군	대한장례식장	043-836-7002
	진천군	성모병원장례식장	043-536-4499
	괴산군	괴산장례식장	043-832-4444
	음성군	음성농협장례식장	043-872-4119
단양군	단양장례식장	043-422-4440	
충남 (14)	천안시	천안의료원상례원	041-570-7044
	공주시	공주장례식장	041-854-1122
	보령시(2)	웅천장례식장	041-931-3444
		보령수협장례식장	041-932-4004
	아산시(2)	(주)배방장례식장	041-544-1500
		신정장례문화원	041-549-4441
	서산시	(주)서산장례식장	041-664-4500
	논산시	놀이장례식장	041-733-0404
	당진시	당진장례식장	041-354-4444
	금산군	새금산병원장례식장	041-754-4474
	부여군	(주)사비장례식장	041-835-4100
서천군	서천장례식장	041-952-4402	

시·도	시·군·구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전화번호
	청양군	청양농협장례식장	041-942-4600
	홍성군	홍성의료원	041-630-6244
전북 (15)	전주시(2)	(유)예수병원장례식장	063-285-1009
		대송장례식장	063-274-4300
	군산시	(유)은파장례문화원	063-445-4444
	익산시	천도장례식장	063-855-1734
	정읍시	정읍아산병원장례식장	063-530-6644
	남원시	남원의료원장례식장	063-620-1140
	김제시	김제중앙병원장례식장	063-548-8844
	완주군	삼봉장례식장	063-261-4445
	진안군	진안군의료원	063-430-7070
	무주군	무주보건의료원장례식장	063-320-8337
	장수군	장수군보건의료원장례식장	063-351-8050
	임실군	오수장례식장	063-644-0444
	순창군	온누리장례식장	063-653-4482
	고창군	새고창장례식장	063-563-1001
	부안군	부안호남장례식장	063-581-1004
전남 (22)	목포시	삼목장례프리드	061-274-4441
	여수시	여수제일병원장례식장	061-692-4444
	순천시	순천의료원장례식장	061-759-9090
	나주시(2)	영산포농협장례식장	061-334-4440
		(주)에담활주로장례식장	061-332-4441
	광양시	동광양장례식장	061-795-7700
	담양군	담양장례식장	061-383-4244
	곡성군	곡성장례식장	061-362-7575
	구례군	(주)구례장례식장	061-781-0444
	고흥군	유한회사)보람	061-830-3300
	보성군	보성아산병원장례식장	061-850-3444
	화순군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례식장	061-379-7433
	장흥군	(유)행촌장흥종합병원장례식장	061-864-4444
	강진군	강진의료원장례식장	061-430-1004
	해남군	해남병원장례식장	02-533-4444
	영암군	영암농협장례식장	061-472-5544
	무안군	무안장례식장	061-454-9340
	함평군	함평농협장례식장	061-323-4444
	영광군	영광종합병원장례식장	061-350-8044
	장성군	산림조합장성장례식장	061-394-0444
완도군	완도대성병원장례식장	061-554-4456	
진도군	진도군산림조합직영추모관장례식장	061-543-4040	
경북 (15)	포항시	포항의료원장례식장	054-245-0444
	경주시	늘푸른장례식장	054-745-4444
	김천시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례식장	054-429-8280

시·도	시·군·구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전화번호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장례식장	054-850-6440
	구미시	(주)창조이래인장례식장(구미강동병원)	054-473-9650
	영천시	영천장례식장	054-332-4000
	상주시	제일장례식장	054-531-4411
	문경시	문경제일장례식장	054-550-7948
	경산시	경산중앙병원장례식장	053-814-0044
	청도군	청도농협장례식장	1588-3560
	고령군	고령영생병원장례식장	054-956-4455
	성주군	성주효병원장례식장	054-933-1282
	예천군	예천농협장례식장	054-655-0990
	봉화군	해성장례식장	054-674-0015
	울진군	울진군의료원장례식장	054-785-7800
경남 (18)	창원시	창원시립상복공원장례식장	055-712-0930
	진주시	경상대학교병원장례식장	055-750-8448
	통영시	장례식장송례관	055-643-1024
	사천시	사천중앙요양병원장례식장	055-851-5444
	김해시	김해전문장례식장	055-331-4444
	밀양시	한솔병원장례식장	055-356-7213
	거제시	맑은샘병원장례식장	055-636-4800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장례식장	055-389-0600
	의령군	부성장례식장	055-573-4500
	함안군	함안장례식장	055-584-5515
	창녕군	창녕군공설장례식장	055-533-8510
	고성군	고성장례식장 화라(주)	055-672-5000
	남해군	남해병원장례식장	055-863-5444
	하동군	하동병원장례식장	055-884-7044
	산청군	(주)원지산청장례식장	055-974-1234
	함양군	함양장례식장	055-964-2000
	거창군	(주)천수거창장례식장	055-944-4444
	합천군	(주)합천장례식장	055-932-7000
제주 (2)	제주시	(주)그랜드부민장례식장	064-742-5000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064-730-371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감염병예방법 )**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연고자에게 해당 조치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화장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화장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5의2. 제20조의2에 따라 시신의 장사를 치르는 데 드는 경비

**제7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5의5. 법 제20조의2에 따른 감염병환자등 시신의 장사에 관한 업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사방법이 제한되는 시신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감염병과 관련된 감염병환자등(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신으로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해당 감염병의 공고를 하기 전에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해당 감염병환자등의 시신을 화장의 방법으로 장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사방법 제한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은 구술로 한다. 이 경우 장사의 제한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환자등의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장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시행 2020. 9. 14.]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호, 2020. 9. 14., 제정]

가. 장사방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 권고

나. 장사절차: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 권고

다. 시신 처리 및 장례관리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라.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